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10. 2.

운영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발의일자: 2019년 9월 19일

나. 발 의 자: 윤준용 의원 외 4명

다. 회부일자: 2019년 9월 24일

라. 상정일자: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9. 2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오현숙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 영등포구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의회장의 범위를 영결식에 한하도록 정함(안 제2조)
- 의회장의 대상자를 정함(안 제3조)
- 장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함(안 제4조)
- 의회장의 장의기간 등은 「건전가정의례준칙」을 따르도록 정함(안 제6조)

○ 장제비 기준에 대해 정함(안 제7조)

○ 조기계양 및 관계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정함
(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○ 본 제정 조례안은 영등포구의회위원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의회가 장의를 엄숙하고 경건하게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,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

○ 개정안의 주요내용은,

- 안 제2조에서는 영등포구의회장의 범위를 영결식으로 한하고,
- 안 제3조에서는 의회장의 대상으로 임기 중에 사망한 영등포구의회위원으로 하였으며,
- 안 제4조에서는 장의위원회를 9명 이내로 구성하고, 장의위원회에서 의회장의 방법, 일시, 장소, 기간, 소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관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5조에서는 의회장에 대한 신문 공고에 대해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6조에서는 의회장의 의식 등은 「건전가정의례 준칙」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7조에서는 영결식장 설치 등 의회장의 소요비용은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지원토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에서는 의회장 기간에는 조기를 계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- 안 제9조에서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.

○ 검토결과, 불의의 사고로 현직 의원이 사망할 경우 고인에 대한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긍지와 보람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

고 사료되며, 그밖에 상위법 저촉이나 자구에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

(윤준용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3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9월 일

발의자 : 윤준용 의원 외 4명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때 영등포구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의회장의 범위를 영결식에 한하도록 정함(안 제2조)
- 나. 의회장의 대상자를 정함(안 제3조)
- 다. 장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대해 정함(안 제4조)
- 라. 의회장의 장의기간 등은 「건전가정의례준칙」을 따르도록 정함(안 제6조)
- 마. 장제비 기준에 대해 정함(안 제7조)
- 바. 조기계양 및 관계행정기관 등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정함(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)

3. 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
- 「건전가정의례준칙」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집행

다. 입법예고 (2019. 9. 10. ~ 9. 16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범위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장(이하 “의회장”이라 한다)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영결식에 한한다.

제3조(의회장의 대상자)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(이하 “의회”이라 한다)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자 중 의회 사무국장의 제청으로 의장이 결정한다. 다만,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4조(장의위원회) 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회장의 위원회(이하 “장의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장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기본 조례」 제30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,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 의회 의원 및 고인의 친지로 한다.

④ 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의회장을 총괄한다. 다만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⑤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의회장의 방법, 일시, 장소, 기간 및 종교의식에 관한 사항

2. 의회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과 결산에 관한 사항

3. 그밖에 의회장의 집행에 관한 사항

⑥ 의회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.

⑦ 장의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.

제5조(의회장 공고)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의회장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.

제6조(장의기간등) 의회장의 기간·절차 및 의식 등은 「건전가정의례준칙」을 준용한다.

제7조(장의비용)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필요한 금액의 범위에서 지원한다.

제8조(조기계양) 의회장 기간에는 의회 내에 조기를 계양할 수 있다.

제9조(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) 장의위원회는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 표]

장 제 비 기 준(제7조 관련)

사 항 별	규 격	수 량	비 고
영등포구의회장 지원내역			
○신문 광고	3단×15cm	1개사	지방일간지 등
○영결식장 설치	면적 6m×3m=18m ² 높이 4m 이하	1식	
○텐트설치	조립식	4조 이하	
○의자배치	행사용	300조 이하	
○영구차	중형	1대	1일간
○헌화용 꽃 근조 리본 등			
가. 영정사진	대	1조	
나. 헌화	특대	1개	장의위원장용
	대	10개	유족
	일반	300개	조문객용
다. 근조리본	흑색(흉화)	100개	유가족, 장의위원장, 위원용, 내외귀빈 조문객용
	흑색(소)	200개	조문객용
라. 장갑	백색	100족	조문객 및 종사원용
마. 넥타이	흑색	30개	종사원용
바. 영구차 리본	대형	1개	
○조화	대형	1개	의장명의
○안내문 인쇄	모조3절 180g/m ²	500부	의회명의
○장의행사 협조 방송설비		1식	필요시